가족이 돌아가신 뒤 6개월

상속, 순서대로 챙길 것

조영민세무회계
세무사 조영민 · 031-334-7001

상속세 신고기한은 **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**입니다. 3월 10일이든 3월 25일이든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. 그 사이에 3개월 기한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.

기한별로 할 일

	언제까지	할 일
☐	**안 날부터 1개월**	사망신고 (주민센터). 이때 **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**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·부동산·자동차·세금·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☐	**1~2개월**	조회 결과로 재산과 빚 목록 만들기, 돌아가신 분의 10년 치 통장 내역 준비
☐	**안 날부터 3개월**	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가정법원에 **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**
☐	**3~5개월**	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 협의,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
☐	**6개월 (말일 기준)**	**상속세 신고·납부**, 상속 부동산 **취득세** 신고·납부, 돌아가신 분의 그해 **종합소득세** 신고

신고기한 안에 나누세요. 기한 안에 협의해서 나누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. 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면 더 받은 부분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

세금이 달라지는 경우

- ☐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 (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짐)
- ☐ 토지·상가처럼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다 (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짐)
- ☐ 돌아가시기 전 1~2년 사이 큰돈이 인출됐는데 쓴 곳이 분명하지 않다
- ☐ 배우자공제를 얼마나 쓸지 정해야 한다 (나중의 배우자 상속까지 함께 봐야 함)

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

- ☐ 가족관계증명서,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
- 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
- ☐ 부동산 등기부, 예금·보험·주식 잔액
- ☐ 최근 10년 사이 가족에게 준 재산 내역
- ☐ 장례비 영수증
- ☐ 병원비 등 남은 빚과 미납금

현행 세법: 세율 10~50%, 일괄공제 5억 원, 배우자공제 5억~30억 원,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.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%를 공제받습니다. 자녀공제 상향안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지금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예상 상속세와 신고기한, 먼저 계산해 보세요

QR을 찍으면 상속세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· cymtax.co.kr

조영민세무회계 · 세무사 조영민 ·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3, 3층 306호 (명지대역 도보 약 10분) · 031-334-7001 · 평일 09:00–18:00

2026년 11월 현행 세법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. 실제 기한과 세액은 재산 구성과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